

질의	답변
○ 전담부서의 설치방법과 추진위원회와의 관계	○ 추진위원회와는 별개이며 해당과 내에 전담직원 배치함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별도 조례제정 여부	○ 별도 조례제정 계획임
○ 계약해제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사유	○ 이자는 자금치 않음 (案 수정)

5. 討論事項 : 없음

6. 審查結果

- 수정안 가결(반장인치)

7. 修正案 主要骨子

-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원, 기능, 운영등에 관한 내용 삭제(案 제9, 10, 11조)
- 분양계약 해제시 계약금이외의 납입액에 대해 원금을 반환(案 제16조)

8. 修正案本文 및 參考資料 : 별첨

수정안 본문**대구직할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립하는 종합 유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조성과 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단지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기반시설공사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분양지”라 함은 단지조성지중 도로, 공원 및 녹지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입주자에게 분양할 입주시설지를 말한다.

제3조(조성지역과 조성시설) ① 단지 조성지역은 대구직할시 북구 산격동, 검단동일원으로 하며 구체적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한다.

② 단지안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조성하되 시설별 건립위치 및 용지 배분면적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유통업무설비의 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1. 무역센타

2. 도매단지
3. 물류단지
4. 기타시설

제4조(유치업종등) 단지안의 유치업종, 입주업체, 지역제한 등 입주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자) 단지조성사업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단체 또는民間에게 위임,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조상사업비) ①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지상물 보상비
2. 기반시설 공사비
3. 기타 부대비용

② 제1항의 사업비는 입주자 선수금, 재정용자 등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용지매입 등에 관하여 대구직할시(이하 "시"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공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구직할시 종합 유통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종합유통단지 입주자부담금, 시비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단지 조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사업추진조직) 시장은 단지조성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분양기준) 입주자가 분양받을 용지는 분양지를 조성시설별 분양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분양하되, 조성시설별 분양단위면적결정 및 분양용지의 위치질정과 분양절차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분양가격) 용지 분양가격은 조성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며 용지의 위치, 지형 및 이용상의 편의 및 입지여건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제12조(분양공고) 용지를 분양할 때에는 입주자격, 대금납부방법, 분양절차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분양계약) 입주자는 시장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분양가격의 10분지의 1에 해당하는 분양계약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등) ① 시장은 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체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납부 지연이자를 부담케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분양계약금은 제8조의 특별회계에 귀속되며 그 이외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원금을 반환한다.

제15조(분양대금의 정산) ① 조성사업 완료 후 분양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분양계약면적과 실제분양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분양계약가격과 분양정산가격이 차이가 있을 때
3. 기타 확정축량등에 의한 분양대금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소유권의 이전) ① 시장은 조성사업 및 분양대금 정산이 완료되는 입주자 또는 조합이 시설건립계획서를 제출하면 용지소유권을 입주자 또는 조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소유권을 이전받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양도 또는 대여등의 금지) 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용지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입주시설의 건립이 완료된 이후에 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자로 지정한자의 승인을 받아 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18조(분양용지의 회수) 시장은 입주대상자로 인해 제17조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용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기간내 입주시설의 전립을 지원하는 경우

제19조(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기타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

[사업개요]

- 위치 : 북구 산격동, 검단동 일원
- 규모 : 252천평
- 주요기능 : 무역센타, 도매단지, 물류단지, 지원시설
- 사업비 : 10,101억원
- 조성기간 : '92~2000년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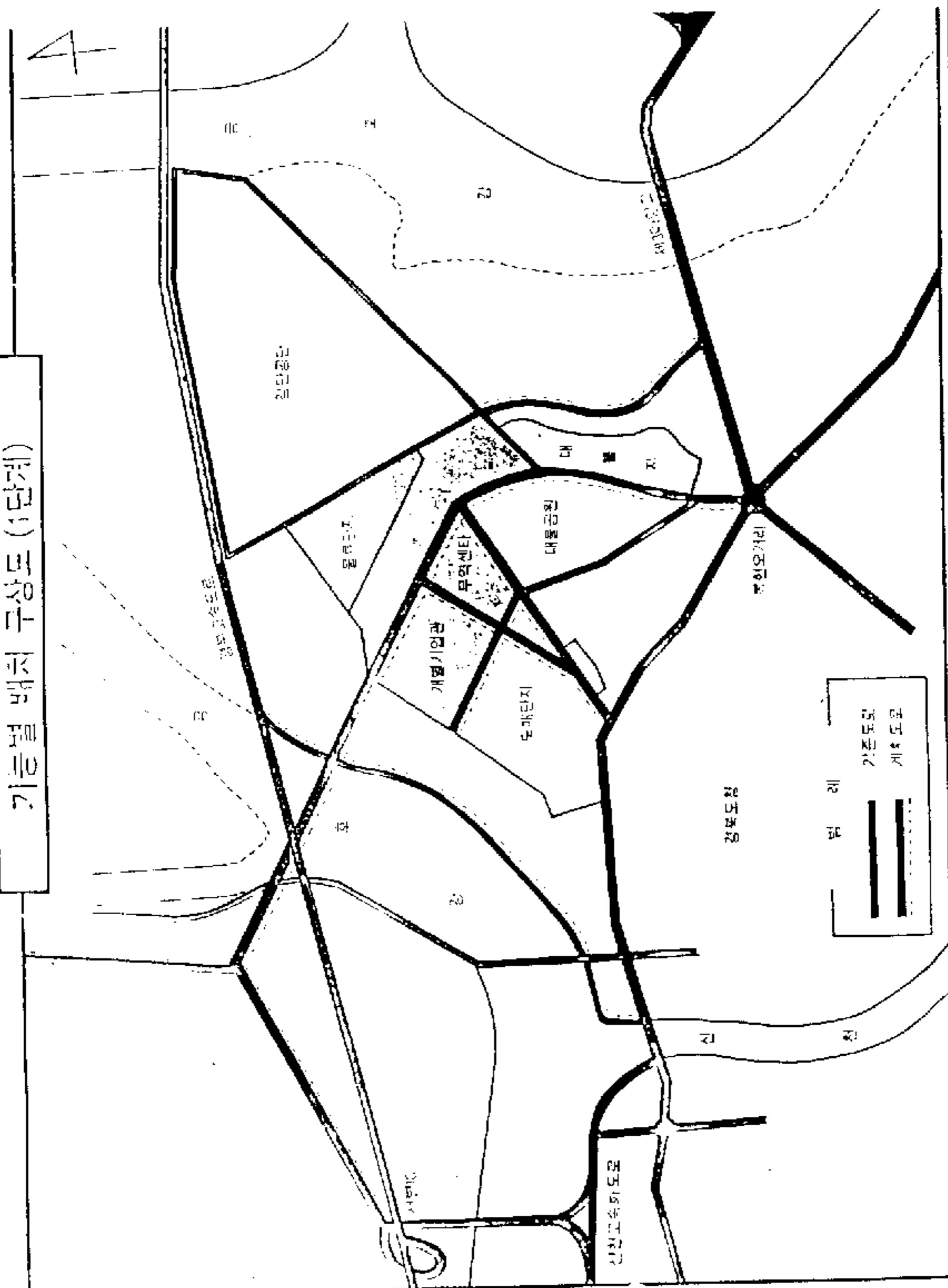
- 입지선정 : '92. 4. 27
- 기본계획 확정 : '91. 7. 14
- 도시기본계획 승인 : '91. 12. 30
- 단계별 추진계획 확정 : '92. 4.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92. 8. 7~'93. 7. 31

[향후계획]

- 분양 및 보상 : '93. 1~'93. 12
- 기반시설조성공사 : '93. 10~'94. 12
- 입주시설공사 : '95. 1~2000년

기능별 배치 구상도(1단계)

기능별 배치 구상도(1단계)



대구직할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립하는 종합유통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제3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시행령(제16조)
- 도시계획법(제25조, 제26조, 제62조)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60조)
- 도·소매업진흥법(제2조, 제7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2조)
- 궁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3조, 제4조, 제7조)
- 지방자치법(제116조, 제117조)
- 지방재정법(제5조)

3. 주요골자

- 단지조성지역을 북구 산격동, 견단동일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함.(안 제3조 제1항)
- 단지안의 시설별 건립위치 및 용지 배분면적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60조의 유통업무실비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함.(안 제3조 제2항)
- 단지안의 유치업종과 입주업체·지역제한등 입주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안 제4조)
- 조성사업비는 입주자 선수금, 재정용자 등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용지매입등에 관하여 시가 참여를 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제2항)
- 단지조성사업은 시장이 행함.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광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 위탁 시행하게 할 수 있음. (안 제5조)
-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합유통단지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음. (안 제8조)
- 시장은 단지조성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20명이내로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단지 입주자들로 하여금 입주업종별 조합등의 구성을 명할 수 있다. (안 제9조)

- 입주자가 분양받을 용지는 분양지를 조성시설별 분양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분양하며 조성시설별 분양단지면적결정 및 분양용지의 위치결정과 분양절차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안 제12조)
- 용지를 분양할 때에는 입주자격, 대금납부방법, 분양절차등을 공고하여야 함. (안 제14조)
- 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용지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다만, 입주시설의 건립이 완료된 이후에는 시장 또는 시장이 단지의 관리자로 지정한 자의 승인을 받아 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음. (안 제19조)
- 입주자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정당히 사유없이 계획기간내 입주시설의 건립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분양용지를 회수할 수 있음. (안 제20조)

4. 제정조례(안)

대구직할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립하는 종합 유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조성과 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단지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기반시설공사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분양지"라 함은 단지조성지종 도로, 공원 및 녹지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입주자에게 분양할 입주시설지를 말한다.

제3조(조성지역과 조성시설) ① 단지 조성지역은 대구직할시 북구 산격동, 검단동 일원으로 하며 구체적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한다.

② 단지 안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조성하되 시설별건립위치 및 용지배분면적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의 유통업무실비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1. 무역센타
2. 도매단지
3. 물류단지
4. 기타시설

제4조(유치입종등) 단지안의 유치입종·입주업태·지역제한 등 입주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자) 단지조성사업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단체 또는民間에게 위임,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조성사업비) ①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 기반시설 공사비
3. 기타 부대비용

②제1항의 사업비는 입주자 선수금, 재정용자등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용지매입등에 관하여 대구직할시(이하 “시”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시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구직할시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종합유통단지 입주자부담금, 시비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단지조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③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사업추진조직) ①시장은 단지조성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공무원중 사업관련국장
2.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업체의 임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③시장은 단지 입주자들로 하여금 사업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합등(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구성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위원회등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의 기능 수행
2. 단지안의 공동시설물 설치 협의
3. 입주자 및 조합 상호간의 이해관계 조정

4. 기타 시장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

②조합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양 신청 및 계약업무 지원
2. 분양대금 납부업무 지원
3. 입주시설 건축비 조달 및 건축공사 시행
4. 조합원의 매장위치 지정
5. 기타 시장이 위탁한 업무의 처리

제11조(추진위원회등의 운영) ①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비등의 서비스를 지금 할 수 있다.

②조합의 회의운영은 당해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분양기준) 입주자가 분양받을 용지는 분양지를 조성시설별 분양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분양하되, 조성시설별 분양단위면적 결정 및 분양용지의 위치결정과 분양 절차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분양가격) 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며, 용지의 위치·지형 및 이용상의 편의등 입지여건에 따라 그 가격을 덜리 산정할 수 있다.

제14조(분양공고) 용지를 분양할 때에는 입주자격, 대금납부방법, 분양절차등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15조(분양계약) 입주자는 시장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분양가격의 10분지와 1에 해당하는 분양계약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등) ①시장은 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체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납부지연이자를 부담케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분양계약금은 제8조의 특별회계에 귀속되며, 그 이외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납입기간중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분양대금의 정산) ①조성사업 완료 후 분양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분양계약면적과 실제분양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분양계약가격과 분양정산가격이 차이가 있을 때
3. 기타 확정측량등에 의한 분양대금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소유권의 이전) ①시장은 조성사업 및 분양대금 정산이 완료되고 입주자 또는 조합이 시설건립계획서를 제출하면 용지소유권을 입주자 또는 조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양도 또는 대여등의 금지) 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용지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
 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입주시설의 건립
 이 완료된 이후에 시장 또는 시장이 단지의 관리자로 지정한자의 승인을 받아 용지
 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20조(분양용지의 회수) 시장은 입주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용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기간내 입주시설의 건립을 지연하는 경우

제21조(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지조성 및 분양과관
 련된 기타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粳輸入開放反對에관한決議案

提案年月日 : 1992. 12

提 案 者 : 產業委員會

1. 主 文 : 별첨

2. 提案事由 및 骨子

가. 提案事由

- 쌀이 우리나라의 主食인 동시에 우리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고 절대다수의 농
 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 쌀수입개방은 농업생산기반 붕괴, 농촌의 폐폐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 어려운 우리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를 천명키 위함.

나. 主要骨子

- 우리의 쌀은 농가소득유지 및 국민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방대상
 이 될수 없음.
- 쌀 수입개방할 경우 농업생산 기반 붕괴, 농촌의 폐폐화를 초래하므로 개방대
 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촉구
-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할력있는 농촌건설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요청
- 대구시 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함을 천명